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FAMILY CAREGIVERS' ELDERLY CARE: UNDERSTANDING THEIR HARD TIME AND CARE BURDEN

Hyuna M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ung-Eun Cha, University of Suwon

CWE-GAM Working Paper Series: 21-10
Program on Gender Analysis in Economics (PGAE)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DOI: 10.17606/3JTG-CV87
AUGUST 2021

This working paper is part of the Care Work and the Economy (CWE-GAM) Project, based at American University's Program on Gender Analysis in Economics (PGAE). The authors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for this report. The findings, views, and conclusions or recommendations expressed in this material are strictly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ose of the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Corresponding author email: mysyrius@gmail.com

CWE-GAM WORKING PAPER SERIES



www.careworkeconomy.org

Photograph by Konstantin Börner

THE CARE WORK AND THE ECONOMY (CWE-GAM) PROJECT

The Care Work and the Economy (CWE-GAM) Project strives to reduce gender gaps in economic outcomes and enhance gender equality by illuminating and properly valuing the broader economic and social contributions of caregivers and integrating care in macroeconomic policymaking toolkits. We work to provide policymakers, scholars, researchers and advocacy groups with gender-aware data, empirical evidence, and analytical tools needed to promote creative, gender-sensitive macroeconomic and social policy solutions. In this era of demographic shifts and economic change, innovative policy solutions to chronic public underinvestment in care provisioning and infrastructures and the constraints that care work places on women's life and employment choices are needed more than ever.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gender-sensitive policy tools that integrate emerging understandings of care work and its connection with labor supply, and economic and welfare outcomes.

Find out more about the project at www.careworkeconomy.org.

THE AUTHOR TEAM

HYUNA MOON



Dr. Hyuna Moon received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fter receiving her Ph.D in political science, she expanded her interest to the field of feminism and NGO health movement. Based on her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Korean society/history and gender studies, she taught graduate courses on Korean studies as a lectur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various issues including migration, health, family, and division of labors. Related to the theme of care she wrote with her colleagues a book titled "Who Will Take Care of the Care Workers?" (2012, Hanul) (*in Korean*). Her book "Mothers Also Want to Hand in Their Resignation" (2012, Jisik Nomad) (*in Korean*) was written based on interviews with mothers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SEUNG-EUN CHA



Seung-Eun Cha received her Ph.D. i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r doctoral dissertation dealt with examining the impact of the family role, as spouse and parent, on individual health experience, based on gender difference. After receiving her Ph.D. her research interests expanded to midlife development, life transition issues, and retirement issues. Currently Cha is working at the University of Suwon as an associate professor, using time use survey data to focus on the field of leisure, sleep, and time pressure. Her research paper 'Social acceleration vs. slowdown' in Development and Society (2017) tried to understand the time pressure trend during the past decade in Korean society and how time pressure experience diverge by social groups.

ABSTRACT

South Korean society is quickly becoming an aging society where the responsibility of care falls on society from family burden. This paper takes this transition as the departure point of our analysis toward a journey to understand the reality Korean family members are facing in terms of elderly care. By using the 27 care stories collected in 2018, this paper investigates partially what specific aspects of the difficulties the family members face in elderly care with a presumption that there might be a clash or inconsistency in the care behaviors of the family members or in their ways of thinking on elderly care. Moreover, the paper aims to illustrate that the root of this inconsistency lies foremost at the difficulty of family care. We conclude in this paper that the issues of 'where' and 'who' take up another dimension of difficulties and burden, apart from physical hardship or labor of elderly car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in the paper.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과 딜레마: 누가 돌보고 어디에서 돌봐야 하는가*

문현아**·차승은***

■ 국문초록 ■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돌봄의 책임이 옮겨가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가족은 돌봄과 관련된 주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시설과 기관으로 노인을 보내거나 집에서 재가요양을 선택해서 노인을 돌보는 방식이 가족이 전담해서 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돌봄 상황에서 경험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 이 논문은 구체적으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심층 인터뷰(27 사례)를 통해 가족 돌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규범과 현실이 얼마나 연결 또는 괴리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점검한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노부모를 '누가' 돌보고 '어디서' 돌볼 것인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구성원들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돌봄이 재가/시설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은 주로 '재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족이 동거/비동거의 상황에 따라 가족 돌봄의 부담의 정도나 양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인을 돌보는 주체는 배우자인가 자녀인가? 자녀라면 남성인가, 여성인가? 딸과 며느리는 어떤 면에서 돌봄의 담당자로서 공통점과 차이를 지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의 돌봄에서 '가족'이 구체적으로 가족 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파악하였다.

주제어: 가족 돌봄, 재가 돌봄, 노인장기요양, 돌봄 경험, 돌봄 부담, 돌봄 책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9S1A5A2A01044190)임을 밝힙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Care Economy Project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의 지원으로 진행된 2018년도 연구과제를 위해 수집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연구책임자 Maria Floro 교수님 (American University)과 은기수 교수님 (서울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문현아(주저자):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관심사는 가족, 건강, 역사이고 최근에는 돌봄과 젠더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mysyrius@gmail.com

*** 차승은(교신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노년기 가족의 건강과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최근에는 생활시간, 시간조망, 돌봄의 경제와 젠더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secha@suwon.ac.kr

I. 서론 및 연구배경

고령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장기요양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향후의 고령사회 노인 돌봄 문제를 대비하는 시발점으로 삼았다. 특히 장기요양법의 서두에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시함으로써 제도의 구체적 목표가 ‘노인건강증진, 생활안정, 가족의 부담경감, 삶의 질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석민, 2012: 168). 법의 서두에서 밝히듯 장기요양법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가족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며, 이를 토대로 노인 돌봄의 틀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장기요양법이라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구축되는 속에서 노인 돌봄의 상황을 누가 담당하고 돌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두 가지 구분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수행하는 돌봄이 무급노동이나 유급노동이냐의 쟁점이며, 다른 하나는 재가에서 돌봄을 제공하느냐 시설에서 제공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는 다시 돌봄의 유형이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돌봄은 무급으로 재가에서 제공하는 경우, 유급으로 재가에서 제공되는 경우, 유급으로 시설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끝으로 돌봄 대상자인 노인 부모를 시설로 보낸 뒤에 가족이 무급의 상태로 방문하면서 돌보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다. 물론, 가족요양보호와 같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유급형태로 돌보는 경우도 있고, 간병인처럼 함께 살면서 가족이 아닌 이들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돌봄의 다양한 맥락이 있지만, 이 맥락을 다 포괄하기에는 분석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 이 글은 ‘가족’을 초점으로 무급으로 재가에서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장기요양법이 실시된 이후,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노인의 8% 남짓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실, 2018: xlvii), 아직 가족에 의한 돌봄이 노인 돌봄에 대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 돌봄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의 변화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사회조사(2002-2018)항목 중 부양의식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전국 15세 이상 7만 명 대상 조사에서 ‘노부모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70.7%에 육박하

였으나, 2018년도에는 약 27%만이 가족 책임이 사회 책임에 우선한다는 가치관을 표현하였다(김유경, 2019). 이러한 부양 가치관 변화의 속도를 생각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 돌봄을 둘러싼 태도가 가족 내에서 세대별로도 다를 수 있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처한 상황에서도 차이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돌봄의 확장과 노인 부양/돌봄 태도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부양의식이 성인 자녀의 특성(e.g. 아들이나 딸이냐), 세대나 계층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노부모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그 실상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장기요양법의 도입으로 노인을 돌보는 데 있어 사회적 서비스가 확대된 지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돌봄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노인 돌봄의 쟁점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 부담의 특성과 성격을 규명하고,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간적 맥락, 어떤 활동과 체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돌봄이 어떻게 개입하고 메울 것인지에 대해 방점이 있었다(한경혜·차승은·민주홍, 2018). 2010년 중반 이후에는 특별히 유급 돌봄제공자의 소진과 잦은 이직문제,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면서, 노동여건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석재은, 2014; 최희경, 2010; 석재은 외, 2015)를 통해 “노동”으로서의 돌봄의 속성은 많이 밝혀졌지만, 반면에 노인 돌봄의 사회적 가치나 윤리 그리고 책임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못하면서(김찬우·박연진, 2014), 시설과 가족 돌봄의 균형 속에서 가족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지의 문제는 부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최근의 사회적 돌봄과 공공서비스가 확대해 온 방식은, 재가 돌봄을 강조하면서 자녀 양육과 노인부양 모두에서 가족 돌봄을 보완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가족에 의한 돌봄이 가용하지 않은 시간을 사회서비스가 메우는 방식(노혜진, 2014)으로 둘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돌봄의 행위 주체¹⁾들이 24시간으로 구획된 일정표 상에서 서로 다른 시간대와 시각에 위치해서 노인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최인희·김정현, 2013; 한은정·김혜경·이정석·권은희, 2014). 이러한 장기요양보호의 정책평가

1) 가족(family), 정부/기관(state), 시장(market) 그리고 지역사회(자원봉사)(community/volunteer)라는 네 개의 지점으로 요약되는 돌봄 체계는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를 이룬다 (Razavi 2007). 가족 돌봄의 공백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공적 자원과 재정 투여가 이루어지면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무계추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에 대해 일부 관련 연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로 가족 돌봄의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하는가 하면, 시간 활용면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줄었으나, 이 부담이 노동의 강도를 경감시켜준 데 국한된다(이현주, 2014; 권현정·고지영, 2015; 이진아, 2015)고 논의하기도 한다. 즉 생활시간 전반에 미친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공식 돌봄 서비스가 비공식 가족 돌봄을 대체/상호협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조하는 수준에 머문다는 결과가 우리 사회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사한 맥락에서 쟁점으로 부각 되고 있다(Bonsang, 2009; 이승호·변금선·신유미, 2016). 일본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여성 가족원이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부담은 줄었지만, 아직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적 부담은 증가했거나 변화가 없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현주, 2015: 188: <표 1>).

가족에 의한 재가 돌봄이 우세한 한국적 현실에서는 가족이 노인 돌봄의 주책임자로 직접 수발은 물론, 사회적 돌봄 개입 시점을 결정하고, 알아보고, 개입방식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Blome, Agnes, Wolfgang, Keck, & Alber., 2009: 162)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가족이 돌보는 부담이 점차 사회적인 공식 영역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의 가족에게 그 부담이 '0'의 수준으로서는 내려갈 수 없고, 일정 정도, 어느 기간까지는 가족이 노인 돌봄을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역시 사실이다. 노인을 돌보는 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넘어서 가족 이외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들로 다양해지면서 돌보는 방식에서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가족들이 노인 돌봄의 사회화로 인해 가족 돌봄의 부담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이에서 부담 정도나 균형에 관한 갈등과 불균형은 '가족화와 탈가족화 현상의 충돌'로도 설명되었다(신경아, 2011: 67). 즉, 노년의 부모는 재가 서비스를 원하고 그것도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자녀세대는 탈가족화 서비스, 즉 시설에 의한 유급제공자에 의한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석재은, 2009; 김동배·박서영·김상범, 2010; 최인희·김은지·정수연·양난주, 2011; 모선희·최세영 2013; 이진아, 2015)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보다 미시적으로 질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을 통해 가족 돌봄의 부담 현실을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연구(양영자, 2018; 신경아, 2011; 양난주, 2013; 최인희 외, 2011; 최인희·김영란·염지혜, 2012; 최인희·송효진·지은숙·정다운, 2016; 이선형·조막래·이

지혜, 2015)도 뒷받침되어 가족 내 돌봄 부담의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전히 가족 내에서 과연 '누구'의 목소리가 가족 돌봄에서 대변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가족'이라는 구성체가 단일한 하나의 합의체가 아닌 다양한 개별 구성원이 속한 공동체임(family as a unit)을 고려해서 가족 내부를 더 들여다보기 위해 질적 방법론을 활용해 가족 내 역동적 관계를 살펴보는 시도다.

사회적 돌봄이 노인을 돌보는 맥락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돌봄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인을 돌보는 개개인의 부담이 사회적 개입으로 얼마나 줄었는지/늘었는지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와 함께 필요한 질문은 과연 누가 그 가족에 해당하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돌봄이 가용한 상황에서 노인 돌봄은 가족 중 '누가' 담당하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가족과 사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가족체계 내에서도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사회와 가족 혹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역할 배분은 고정된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족 내 역학관계와 노인의 건강상태에서 변화와 더불어 변화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한경혜·차승은·민주홍, 2018). 이를테면, 노년기 거주형태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김정석, 2007)에서 지적하듯이 배우자 둘이 살아가는 경우, 약해지는 사람의 배우자가 초기에 돌봄을 시작하다가 돌봄을 받는 사람의 건강상태가 나빠지거나 돌보던 사람이 병이 들거나 다치면 자녀세대가 돌봄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동시에 초기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일시적으로 자녀세대와 단기 동거를 할 수도 있고, 요양병원(요양원)으로 혹은 자녀가 사는 곳 근처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때로는, 자녀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집 근처로 이사를 할 수도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한국 가족의 규범과 구조, 관계의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체계로서 가족의 가용성과 부양 의지가 완화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개인으로서 가족 돌봄 제공자가 겪는 부담 실태가 주요 관심사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와서 부양의식에 관한 담론의 변화 속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 배우자와 자녀, 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가 겪는 다양한 목소리는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다. 또한, 노인 돌봄을 둘러싼 맥락이 어떠하고, 가족 중 과연 '누가' 돌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머지 가족들은 돌봄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같은 가족 역학관계(family dynamic) 역시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진행되는 돌봄 양상의 변화와 그에 따라 '어디서' 돌볼 것인가의 선택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세대 간 인식 차이, 그들의 가치관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 기존 세대 관계 연구

에서는 그 내막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다.

이 글은 바로 이런 가족 역학관계를 중심축으로 해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처해 있는 딜레마 상황, 즉 ‘누구’와 ‘어디’의 문제를 가지고 기존의 가족 돌봄에서 제기된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의 틀을 재구성해 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가족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에 대해서 통용되던 규범과 현실의 어긋남 혹은 불일치의 현황을 심층 면접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 가족 돌봄이 겪는 어려움의 현실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현재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작업은 세대 관계 문법의 변화, 미래 가족으로 변화할 모습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돌봄 수혜 대상자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심층 구술 인터뷰 방법론

노인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들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심층 구술 방법을 시도하였다. 질적 방법론의 주요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심층 인터뷰 방식은 ‘맥락적 이해’와 ‘해석적 분석’을 주요하게 강조한다(Mason, 2002: 2). 이런 측면에서 가족들에 대한 역학관계나 내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심층 인터뷰 방식이 유용하다. 특히 질문과 대답의 일대일 방식이기보다 보다 열린 구조로 진행되는 이른바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접근이 개별 가족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드러내는 데 보탬이 된다. 그러나 돌봄과 관련된 가족의 관계는 일시적인 순간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상 그간의 가족‘사’라는 맥락이 깔려 있다. 가족의 ‘역사’의 맥락을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 이 연구는 인터뷰 방식에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적 접근을 접합했다. 이는 가족 개개인의 ‘생애사’와 돌봄을 연결해 이야기가 풀려가는 대로 가족들의 과거와 현재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듣는’데 집중하며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분석을 해석적으로 시도했다는 의미다.

최근 강조되는 구술사와 질적 연구 분석에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의미의 발견, 창조적 해석의 가능성(Portelli, 2006; Portelli, 2018)과 연구자의 자기-성찰성(윤택림,

2019: 238)에 있다. 이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몰입해 정답을 얻으려 인터뷰 내용을 끌어가기보다 인터뷰 대상자의 생애를 따라가며 그 생애를 충분히 들으며 그 생애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분석하는 데 방점을 찍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토대로 이 연구는 개인의 돌봄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애사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파악되도록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개별 가족생애 과정을 따라가며 가족 돌봄 담당자가 경험하는 돌봄 관련 상황에 대한 판단, 견해, 의견을 듣고 그에 관한 맥락적/해석적 분석을 시도했다.

2. 가족을 돌보는 가족 중 ‘누구’들

위의 방법론을 토대로 2018년 5월부터 파일럿 조사를 시작해서 2018년 12월까지 조사를 일단락 했다(Moon et al., 2019). 인터뷰에 대해서는 연구진의 소속기관에서 IRB 심의를 받아 진행하였다(IRB No. 1804/003-002). 추후 일부 심층면접 대상자를 중심으로 돌봄 상황의 변화과정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 연구 전체적으로는 아동 돌봄과 유급 돌봄에 관한 연구대상을 포함해서 총 96사례를 진행했으나, 이 중에서 그 중 노인 대상 가족 무급 돌봄 사례만 이번 분석에서 활용하였다.²⁾ 27 사례의 응답자들은 가족 내 구성원들이 하는 돌봄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섭외된 가족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표 1>은 인터뷰 응답자들의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연구 참여 대상자 이름은 익명 처리를 위해 사례를 기호화 하였다. 동거하는 여부를 기본으로 크게 심층 면접 사례를 구분해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젠더와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 간의 젠더 관계를 <표 1>에서 간략히 정리해서 제시하였다.

〈표 1〉 가족 돌봄 제공자 특징

	심층 면접 대상자	출생 연도	동거 여부	성별 (돌봄제공자 / 돌봄수혜대상)	돌봄 수혜 노인과 제공자 관계
1	G-EC-0801-사례 1	1970	비동거	여/여	딸-친정어머니
2	S-EC-0702-사례 2	1968	비동거	여/남	딸-친정아버지
3	S-EC-0720-사례 3	1966	비동거	여/남	며느리-시아버지

2) 인터뷰 진행과정과 전체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Moon et als., 2019) 참고.

	심층 면접 대상자	출생 연도	동거 여부	성별 (돌봄제공자 /돌봄수혜대상)	돌봄 수혜 노인과 제공자 관계
4	S-EC-0724-사례 4	1958	비동거	여/남	딸-친정아버지
5	G-EC-0809-사례 5	1970	비동거	여/여	딸-친정어머니
6	G-EC-0823-사례 6	1974	비동거	여/여	딸-친정어머니
7	G-EC-0823-사례 7	1974	비동거	여/여	며느리-시아버지
8	G-EC-0906-사례 8	1947	비동거	여/남	배우자
9	G-EC-0914-사례 9	1967	비동거	여/여	며느리-시아머니
10	G-EC-1029-사례 10	1969	비동거	여/여	며느리-시아머니
11	G-EC-1129-사례 11	1971	비동거	여/남	딸-아버지
12	G-EC-1104-사례 12	1953	비동거	남/여	사위-장모님
13	S-EC-0724-사례 13	1929	비동거	남/여	배우자
14	G-EP-1101-사례 14	1957	동거	남/여	아들-어머니
15	G-EC-1012-사례 15	1968	동거	여/여	딸-친정어머니
16	G-EC-1109-사례 16	1969	동거	여/여	며느리-시아머니
17	G-EC-1205-사례 17	1949	동거	여/남	배우자
18	G-EC-1219-사례 18	1956	동거	여/여	며느리-시아머니
19	S-EC-0529-사례 19	1968	동거	여/여	딸-친정어머니
20	G-EC-0806-사례 20	1968	동거	여/여	딸-친정어머니
21	S-EC-0906-사례 21	1945	동거	여/남	배우자
22	S-EC-0906-사례 22	1933	동거	여/남	배우자
23	G-EC-0605-사례 23	1956	동거	여/여	며느리-시아머니
24	G-EP-1029-사례 24	1977	동거	여/남	딸-친정아버지
25	G-EC-1002-사례 25	1974	동거	남/남	아들-아버지
26	G-EC-1117-사례 26	1969	동거	남/여	아들-어머니
27	G-EC-1201-사례 27	1979	동거	남/남	사위-장인

〈표 1〉을 살펴보면, 노인 돌봄의 제공에서 여성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21 사례로 2/3 이상에서 여성이 주된 가족 돌봄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섭외를 진행할 때 남성의 사례도 비교적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노인 돌봄 제공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남성이 남성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2 사례에 불과한 반면, 여성이 여성노인을 돌보는 경우는 12 사례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 돌봄의 경우, 남성이 아내를 돌보는 경우는 1 사례에 불과했음에 비해 여성의 경우는 남편을 돌보는 사례로 4사례를 찾아낼 수 있어서, 여성의 돌봄 책임이나 돌봄을 하는 현실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다.

III. 가족 돌봄에서 ‘누구’와 ‘어디’에 관한 쟁점

1. 가족 돌봄 접근들의 재고: 친밀감이 넘나드는 ‘경계’

누가 돌봐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장기요양법이 시작되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대체로 ‘가족’이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장기요양법이 제도화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그 ‘누구’의 질문은 가족으로부터 유급제공자로 옮겨가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 변화되는 것은 ‘가족’과 ‘비가족’, 돌봄에 대한 의미화의 변화로 보인다. 유급제공자의 노인 돌봄과 가족 제공자의 노인 돌봄의 맥락의 차이가 있는지부터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흔히 ‘돌봄’에 대한 설명에서는 ‘가족 같은 돌봄’을 강조한다. 이 표현의 핵심에는 ‘친밀하다’라는 정서가 존재한다. 시설돌봄이나 요양보호사의 방문이 제도 도입 초기에 대상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졌던 이유도 이 친밀감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친밀감은 같은 가족이라도 친밀감을 나누기가 쉽지 않지만, ‘남’이라고 여겨지는 요양보호사라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 친밀함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일종의 의무처럼 공유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돌봄은 이 친밀함을 전제로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법의 도입과 더불어, 혹은 그 이전에 이 친밀함의 쟁점은 이미 가족 내에서 문제 제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이제 그냥 포기를 하고 살죠.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 인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하는 걸 잘못

했다고만 말을 하니까. ... 내가 항상 얹매이는 느낌. 누가 시어머니랑 옆에 같이 산다는 이야기 들으면 시어머니가 귀찮게도 안하는데 뭘 저러나 했는데, 실제 같이 살아보니까, 나는 절대 우리 며느리하고 같이 안 산다고 다짐해요. 시어머니도 같이 분리돼서 살 때에는 내가 인사만 하면 돼요. 명절 때, 생일 때. 그런데 같이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매일 매일 얼굴 보고, 매일 매일 수발들고 밥차리고. ... 아들들은 안 와요. 자기네 사는 게 힘드니까, 막내 딸은 일요일마다 한번씩 오고. ... 요양보호사를 한 달만 쓰기로 했었는데, 할머니가 팔이 다 낳았는데도, [요양보호사와] 친구가 되었잖아요. 나(시어머니)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생계]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 시누가 자기기가 돈을 내겠다고, 돈을 부담 할테니 계속 [요양보호사가] 자기 엄마 돌봐 주게 하라고 해서” (G-EC-0605-사례 23).

사례 23은 시어머니가 아파서 모시고 산지 18년 정도가 되었고, 혼자 모시다가 팔을 다치면서 거동이 불편해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본인은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그간의 정서적 불편함으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항상 얹매이는 느낌”을 갖고 살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어머니는 18년을 모신 며느리의 돌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남’이라고 여겨지는 요양보호사는 자신(시어머니)과 ‘놀아주는’ 친구가 된다고 좋아하고 있다. 누군가가 몸이 불편한 노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일상을 즐겁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 입장에서 큰 위로가 된다. 그 누군가는 가족이어도 괜찮고,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례 23의 경우를 보면, 이제 시어머니와 ‘친밀한 사람’은 요양보호사이고, 그 시어머니의 직계 아들이나 딸(시누)도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이제는 상황에 따라 친밀함을 요양보호사에게로 넘겨줄 수 있다는 뜻일까?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 “언니”라고 엄마한테 말씀을 [하시거든요]. 호칭이 굉장히 편하게. 그것도 친밀하니까 좋은데 [요양보호사 분이 엄마한테] 간혹 화도 내시고, 딸하고 엄마의 관계. 친동생하고 언니 관계처럼 허물없이 그렇게 지내시고. 한 편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한 편으로는 그게 조금 예의가 벗어나는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 [...] 그런데 그런 걸 일일이 말을 하거나 개입하기에는 어렵고. (G-EC-0809-사례 5)

초기 치매 상태에 있는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사례 5는 매일 오전 3시간씩 자신을 대신해서 친정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고맙기도 하지만, 친정엄마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양가적 마음으로 당혹감을 느낀다. 사례 5의 사례를 보면 요양보호사와 돌봄을 받는 노인의 친밀감은 가족의 입장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가족 이외의 사람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바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런 친밀함이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한편, 재가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노인 돌봄대상자와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친밀감을 나누는 것과 별도로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덧붙여지는 심정적, 감정적인 또다른 책임의 문제가 내재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만족하지 않죠. 더 해 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시간도 왔다 갔다 왕복 세 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자가로 가면 짧겠지만 제가 버스 타고 대중으로 다니니까 시간 소요도 그렇고 저도 직장이 있고 제 집도 돌봐야 되고. 엄마한테 시간 쓰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마음이 늘 죄송하고 그렇죠. [...] 왕복 3시간 잡고 가서 얼굴만 보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청소도 해야 되고 엄마 이야기도 듣고 티비도 보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때에는 만나질 있다 오지만 어떨 때에는 하루 잡고 있다 오고 하니까.(G-EC-0809-사례 5)

사례 5는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이다. 돌봄에 관한 연구들은 시간양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심리적 대기시간(attentioness)”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돌봄제공자의 돌봄 시간은 사실상 총 돌봄 노동 시간 이외에 심리적 대기시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례 5의 언급처럼 “늘 신경 쓰고 눈앞에 없어도 마음이 쓰이는” 것이 가족의 입장에서의 현실이다. 유급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이런 신경쓰임은 요구되지 않거나 주요한 마음쓰임이 되지 않고 있어 보인다.³⁾ 이에 비해, 사례 5의 경우처럼 딸, 즉 가족 돌봄자의 경우에는 ‘더 해야 하는데’라는 정서가 내재한 가운데, 늘 돌봄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그곳에 있어야 하고, 따

3) 연구진이 진행한 인터뷰 사례 중 한 요양보호사(S-EP-0815)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면 다 잊어 버린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직업이기에 하루 종일 돌봄 대상자 생각을 할 수 없고,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라서 노인의 행동이나 상황이 변화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언급된다. 관리적 돌봄(supervisory care)(Folbre and Wright, 2012:4), 혹은 “멤도는 돌봄”(on-call care)(Bittman, Fast, Fisher, & Thomson, 2004: 75)이라는 개념으로서 소개된 이러한 마음 쓰임은 “관심”, “우선순위”, “책임”과 같은 단어와 함께 가족 돌봄의 맥락에서는 자주 등장하며 중요하게 고려되는 단어이다.

아줌마[요양보호사] 왔다가 그냥 청소기 한번 휙 돌라고 간다고. 애기만 하고 간다고 하니까 답답해요. [...] 글썽요. 그냥 고마운. 왔다 가는 그분들도 힘들다는 걸 여러 가지 제3자로써 듣고 보고하니까. [...] 엄마도 편하게 했는데, [...] 엄마가 별로 좋아진 것 같지 않고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도 크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해도 좋은 건가. [...] 너무 쉽게 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구제적인 일이 보여지는 결과를 전달받고 계획서를 보고, 이러고 싶어요. (G-EC-0809-사례 5).

위의 사례 5가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돌봄 책임자’와 ‘돌봄을 수행하는자’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지만, 그 경계가 아주 뚜렷하지도 않다. 또한 돌봄을 수행하는 자와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생각하는 “잘 돌본다는 것”의 의미는 가족 같은 마음 쓰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돌봄의 질과 좋은 돌봄을 통해 병세나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랄수록, 가족이라면 “뭔가 남들보다 다르게 더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노인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기대한다. 집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시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믿음 역시 가족이 돌본다면 노인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때문에 가족 돌봄 제공자의 “가족 돌봄에 대한 신화”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대신할 때에도 “유사가족원(quasi-family)”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하며, 그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의 범주는 단순히 가족을 대신한 시간 메우기에 그치지 않고, 노인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평가, 가족과의 정보공유 그리고 미래의 돌봄 계획 수립까지 포함하게 된다.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그 가족에 대한 여러 평가나 바라는 바를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장기요양제도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토론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가족

돌봄에서 이러한 질문은 곧 이중성과 모순, 그리고 사회적 돌봄에 대한 가족 돌봄자들의 양가적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모순과 이중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돌봄부담과 책임 문제에서 가족들은 어떠한 딜레마를 겪고 있는지 다음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2. 돌봄 부담과 가족 책임의 결합과 모순

1) 가족 중 ‘누가’ 돌봐야 하는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노인 돌봄과 가족 부양과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특히 가족관계로 볼 때, 며느리 돌봄 제공자의 비중이 다른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에는 가족 돌봄자 다수가 며느리(대부분 장남의 처)였으나, 2013년에는 주된 가족 돌봄자가 며느리라는 응답이 23%로 감소, 딸이나 남성이 주된 가족 돌봄자로 응답하는 비율이 증가(최인화·김영란·이아름·박신아, 2014: 48)하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 돌봄이 우세한 가운데, 자녀 중에서는 친자녀의 돌봄이 우세한 서구 유럽의 사례(Blome et als., 2009: 153)와 비교해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돌봄 상황이 특이하다고도 볼 수 있다. 심층 면접을 진행하면서 아들과 사위의 경우에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2사례, 아버지를 돌보는 1사례, 사위가 장모를 돌보는 1사례, 장인을 돌보는 1사례로 기대 이상으로 사위가 돌보는 경우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위의 경우는 사위의 부인(노인의 딸)이 기본적인 돌봄을 맡고 사위가 보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도맡아 하는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 배우자 돌봄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돌보는 경우는 1 사례에 불과했으나, 여성의 경우는 4 사례를 찾아낼 수 있어서, 여성의 돌봄 책임이나 돌봄을 하는 현실은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축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자료에서 사례의 적고 많음으로 경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배우자끼리 돌보는 경우(5 사례)를 제외하고 22건의 사례 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5사례, 딸과 어머니는 6 사례로 며느리 사례가 하나 더 적다. 아버지나 시아버지를 돌보는 경우, 며느리가 하는 경우 2 사례, 딸이 하는 경우 4 사례로 여성이 노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면, 타성의 가족원(가령, 며느리)이 돌봄을 하는 경우가 7 사례, 딸이 하는 경우가 10사례로 딸들이 노인을 돌보는 사례가 우세하다. 다만, 이는 인터뷰 진행 당시의 상황에 국한된 것이다. 생애사 방식을 통해 돌봄제공자들의 돌봄

의 전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는 친정부모를 돌보지만 과거에 시부모님을 돌본 때도 있고, 현재 시부모/친정부모 돌봄을 병행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돌봄의 맥락만으로 딸이 돌보는 경우가 많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덧붙여,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노인을 돌보거나 한 명의 노년 부모를 자녀 여럿이 돌아가며 돌보는 것과 같은 돌봄의 중층적 상황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장남이 노년의 부모를 돌보기를 원하는 사례 13을 통해 한국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돌봄과 장남의 역할, 의무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사례 13은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사례로 섭외가 되었으나 당사자가 90세가 넘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관계로 본인도 돌봄을 받을 처지에 놓이는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언급했다.

장남이니까. [...] 당연히. 장남한테 가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딸이 있지만 딸이 잘 하지만 딸이 잘 한다고, '나 딸한테 간다'고 하면 장남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좋지 않지. 만약에 가게 되면 장남한테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S-EC-0724-사례 13).

사례 13이 언급하는 장남 돌봄에 대한 모습은 장남의 체면을 생각한 측면과 장남에게 돌봄을 받아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교차한다. 그런데 이 사례는 사례 13의 딸인 사례 4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현재 가족관계 내에서 돌봄을 둘러싼 묘한 기류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나는 딸하고 같이 산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셨어요. 저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지'라고 생각 했는데 요 근래에는 계속 큰아들한테. ... 저희 큰 오빠한테 '너 이사 가면 거기 방 하나 비워놔라. 내가 여기 살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 그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아버지는 큰아들이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큰 오빠는 절대 모신다는 말을 안 꺼내요. 아마 큰 올케도 [시아버지 돌보는] 맘을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 마지막에 힘들면 나라도 모셔야 하지 않나. 그런 각오는 하고 있는데. [...] 제가 선택 못 하는 이유가 8층에 큰 오빠가 있는데 내가 모신다고 하는 것도 오빠 입장에서는 별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또 쉽게 말도 못 하고 있거든요. (S-EC-0724-사례 4)

사례 4는 어머니를 돌보다가 어머니가 얼마 전 요양원에 가시면서 이에 더해 혼자 계신 아버지도 어머니와 함께 돌보는 상황이 된 경우다. 딸로서 아버지를 모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규범이 그 생각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가로막아주고 있다고 느낀다. 누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사안에 관한 규범이 현재 “모호하고 애매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도,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못한다.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답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족들은 ‘누가’ 돌봐야 하는가의 규범과 현실 사이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

며느리는 나 아니면 누가 해. 의무야. 의무이고 내 생활의 일부가 돼 버리니까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다 비우고. (G-EC-1219-사례 18)

사례 18의 이야기는 앞서 ‘장남’이 돌봐야 한다는 부모세대의 이야기 규범과 나란히 간다. 이는 며느리가 시부모의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는 기존의 규범이 여전히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 규범을 따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임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며느리 처지에서 규범이 강요하는 돌봄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점이다. 가족 돌봄이 노년의 부모에 대해 친밀함을 갖고 정성어린 마음 씀씀이까지 요구한다고 할 때, ‘마음을 비운’ 며느리는 남이라고 생각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해 오히려 돌봄의 ‘질’의 측면에서는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의 반영인지 한국 사회는 사실 빠른 속도로 ‘며느리’ 대신 ‘딸’이 주된 돌봄자로 대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요즘 며느리”이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다는 언급에서처럼 이제는 며느리가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점점 사라지는 맥락과 맞물려 가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이 아프면 딸이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본인 부모가 아니잖아. 본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뭘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며느리가 뭘 해 주면 좋은 거고. (S-EC-0702-사례 2).

사례 2의 생각에 따르면 며느리가 본인의 부모가 아닌 시부모를 위한 돌봄에 참여하는 것은 더는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사례 2의 개인적인 생각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도 동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보니까. 그걸 강요한다고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내 부모니까. 며느리들한테 푸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니 부모는 니가 챙기고 내 부모는 내가 챙기고 그렇게 되는. 요즘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그런 거 같고, 그렇게 변한 것 같구 (G-EC-1129-사례 11)

사례 11은 이렇게 되기까지 가족 내에서 여러 갈등과 충돌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상황이 닥쳤을 때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누가 나서야 하는가의 문제가 가족 간의 갈등의 불씨로 작용한다.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딸들은 이제는 노부모를 돌보는 일이 며느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면서 며느리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오빠나 남동생의 역할이 현재 노부모를 돌보는 맥락에서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며느리의 경우 시부모 돌봄을 감당하면서 그 일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하는 일들을 딸이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여전히 규범을 둘러싼 원칙이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국에서는 핀치가 가족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한 적이 있다. 핀치에 따르면, 전통적인 사고의 틀로서 이상적 규범(normative rule)이 기반하고 있는 속에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행위적 규제(behavioral regularity)를 따르게 되는데, 이때 이들 간에 모순 혹은 불일치가 발생한다(Finch, 1989: 145). 과거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핀치의 분석은 부양책임의 문제에서 개개인이 인지하는 내적갈등과 모순의 근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분석사례에서는 개인의 내적갈등과 더불어서 가족구성원 간에도 이 모순과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돌봄 문제를 둘러싸고 가족들 간의 관계갈등과 충돌이 표면화되는 양상도 결국은 서로 다른 생각과 규범 그리고 현실 인식 속에서 가족구성원이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합의할 수 없어서 드러나는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그 가족의 배경이 되는 사회는 여전히 '누구'에 대해 묵묵부답하고 있음에 따라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고민은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도 시댁이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 아빠도 좀 보기에다 미안하고 너무 친정이 의지 하니까. 그게 좀 미안해요. [...] 같이 살자고 했을 때 큰 아들이라서 안 된다고 말은 했죠. (G-EC-0801-사례 1)

위의 이야기대로 사례 1은 언니와 더불어 본인의 부모,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병원에 가거나 급하게 엄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딸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며느리보다 딸이 돌보게 되는 맥락을 설명한다. 그렇지만 본인 남편의 부모에 관한 생각도 고려하면 상황이 복합적이라는 점도 토로한다. 자칫 딸이라고 나서면 친정 부모도 모시고 시부모도 돌봐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딸이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경우를 고려할 때, 딸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남편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시부모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지 않고자 하는 측면을 한쪽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사위의 경우는 어떻게? 사위에 대한 부담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혀 요구되지 않았던 측면이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사위들도 돌봄에 조금씩 동참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었다. 사례 12를 통해 상황을 살펴보자.

특히 장모 이런 걸로 하면 친구들이 너네 와이프가 하게 하지 왜 너가 하냐고. [...]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주로 주말이나 이럴 때 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장모님 돌봄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돌리고. [...] 한국 사람의 정서가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처갓집은 멀수록 좋고’, ‘집사람이 하지 네가 나서서 하고 얹매이고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G-EC-1104-사례 12).

사례 12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설명하면서 본인이 장모님을 돌보는 데 참여하게 된 맥락을 경제적 비용의 측면과 더불어 설명한다. “저도 장모님한테 받은 게 없었다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고 애들 돌봄도 그렇지만 우리 다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빠듯하고 어렵잖아요. 재정적 지원.” (G-EC-1104-사례 12)”. 사례 24의 경우에는 딸이 아버지를 모시는 경우인데, 부모가 사위 빚을 갚아주어 남편이 같이 사는 것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하면 또 판단이 달라진다.

특히 이 사람은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머니니까 같이 사는 걸로 이해해요. [...] 그런데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걸릴 걸 생각해 봤는데 못 볼 거 같아요. 엄마가 불쌍해서 하는 거죠. 커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엄마가 독박 쓰는 거 억울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충분히 고생을 많이 하면서 너네를 이만큼 키웠는데 나 혼자 이 집을 떠안기 힘들다고 하세

요. 그리고 그걸 자식이 커버해 줘야 한다고 해서 같이 안 사는 동생들은 엄마한테 용돈을 드려요. 그런 식으로 금전적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어 하세요. 동생들도 살기 힘드니까.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힘들어하죠. 저도 그렇고. (G-EP-1029-사례 24)

그간 돌봄의 문제는 가족-시장-국가 중에서 누가 주로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개별 가족 내에서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점을 다소 간과했다. 돌봄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이 맞물려 변화하면서 가족원 내에서도 협상과 조절이 어려운 부분들이 노인 돌봄의 상황에서 하나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 돌봄자의 경험과 그들의 돌봄에 관한 인식은 가족구조의 변화, 세대관계의 지형변화, 가족원 간의 친밀감, 그리고 돌봄에 대한 저마다의 인식과 맞물려 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 혹은 성인 자녀들 간에도 노인을 돌보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차이는 가족 내 성별 불평등, 연령 격차, 계층(e.g. 교육수준이나 소득) 차이와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례를 열거하는 것은 이 중 어느 사례가 정답이라고 연구진이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답이 있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적어도 정답을 향한 사회적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가족원들이 '누구'를 결정하는 부담을 덜고, 가족의 상황에 맞는 조정과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2)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오래된 관습적 전통의 의미에서 좋은 것으로 간주해 왔다. 통계청 기사에 따르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와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살펴보면 2004년까지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에 비해 그 이후 상황이 역전되어 2017년에 이르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⁴⁾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객사'라는 말은 집 밖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적어도 21세기 이전까지의 세대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삶의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 한국인 10명 중 9명이 객사(客死)한다. 28만 5000명. 2017년 사망한 한국인 수다. 그러나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 이들은 4만 1000명(14.4%)에 그쳤다. 실제로 병원에서 숨을 거둔 이들은 같은 해 21만7000명(76.2%)이다(서울신문, 2019 3월 19일자 "76%가 병원 객사, 이제는 더 나은 죽음 생각해야").

바로 이런 전통 혹은 관습과 관련된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은 장소를 둘러싼 기본적인 딜레마를 겪고 있다.

‘재가’는 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다른 나라처럼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주로 집에서 가족이 동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대부분의 노인 돌봄은 일차적으로 배우자와 같이 살아가는 재가 돌봄 형태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배우자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노년기 부모는 자녀들과 같이 살면서, 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혹은 재가 서비스로 지원되는 사회적 돌봄을 병행하게 된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 노년의 부모는 자녀 중 한 가족과 동거를 하고, 다른 자녀들이 이 노년의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방식(재정지원을 하거나 비동거 자녀가 직접 방문 돌봄을 하는 방식)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상당 부분 돌봄은 시설로 보내지기 전에 ‘재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재가’에서 ‘동거’하는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가족 부양자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거하는 가족 돌봄 제공자들이 동거하지 않았을 때 비해 돌봄 시간도 더 길고 스트레스도 더 높게 나타난다고 밝힌바 있다(Bittman et als., 2004: 77; 백용운·최수일, 2010). 우리의 연구대상자에게서도 동거사례가 비동거 사례보다 돌봄 노동의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심리적 측면에서 이들이 느끼는 무거운 부담이나 긴장감 등이 동거하는 돌봄 제공자들의 상황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희생이고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사실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 할 여유도 없었고 지금도 그냥 무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거지. (G-EC-1117-사례 26)

정말 사소한 일이고 애매한 상황이 많아요. 갑자기 닥친 상황이고 받아들이기 힘이 들었지만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죠. 언젠가 있을 일이고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 어머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어느 상황에서나 다 들리거든요. 항상 긴장이 돼 있는 거예요. (G-EC-1109-사례 16).

노인 돌봄 상황에서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것은 지극히 한국적 돌봄의 맥락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⁵⁾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 즉 사례 26이나 사례 16은 이렇게 동거하면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 ‘기계적으로’ 의식을 하지 않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하는 점이 한 가지 있다. 이들은 사회적 규범인 부모 돌봄을 ‘동거’하면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 특히 동거하는 가족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노인을 돌보기 위해 ‘동거를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돌봄 정책은 이런 동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 3시간 요양보호사의 방문만으로 이들이 24시간 내내 감당해야 하는 돌봄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경우는 어떠한가? 노인이 혼자살거나 혹은 노인 부부가구가 늘면서 자녀들이 노인의 일상을 챙기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집안일 돕는 일이나 병원 방문 때문에 일주일에 며칠씩 노년의 부모를 찾는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한다면(Eun & Kang, 2019) 실제로 노인과는 함께 살지 않지만, 가족이 종종 방문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된다.

노년 부모를 돌볼 때에 “간단한 외출을 해도 누워있는 노인이 마음에 쓰이고”(G-EC-1201-사례 27), “친구 만나는 것도 다 접고” (G-EC-0806-사례 20),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일하는] 기회가 있어도 차마 시도하지 못하는”(G-EC-1117-사례 26) 등 사회생활이나 자유시간의 일상이 힘든 상황은 비동거 상태에 노인을 돌볼 때에도 동거하며 돌보는 자녀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비동거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돌봄을 하러 방문하는 이동시간이 길어서 힘든 점을 토로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도 보고 해야 되니까 [...]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인데.(G-EC-1029-사례 10).

5) 동거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노인 돌봄에서 동거가 필수적인지에 대한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가적 돌봄 체계가 가족으로부터 최대한 독립적인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지역공동체나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돌봄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가능한 공공적 차원의 돌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틀이 우선시 되어 있다(Blome et als., 2009: 131).

저는 맨날 급한 거예요. 아침에 갔다가. 거리가 좀 있으니까 엄마 뭐 좀 해 드리고 뭐 하고 뭐 하고 살짝 치우고 빨래 널어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면 애들이 올 시간이니까 저는 쉴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랑한테. 신랑한테 힘들다는 건 알지만 거기에 대고 투덜덜 수가 없죠. 투정 부리기 그런 부분도 있죠.” (사례 6).

이처럼, 노인을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가 겪는 장소를 둘러싼 딜레마는 동거를 통해, 혹은 같이 살지 않아도 노인 돌봄의 책임을 맡는 순간부터 돌봄 부담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다면, 돌보는 노인을 주간요양센터나 24시간 돌봄시설로 장소를 옮기면 이 장소와 관련된 부담은 줄어들까?

사례 2는 “돈이 넉넉해도 (주간 시설에는) 24시간 계실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언급하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본인의 집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행복하죠”(S-EC-0702)라고 말을 이었다. 사례 2는 가족 돌봄 서비스 시간이 더 연장되거나 더 저렴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리고 24시간 노부모 옆에서 같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집에서 돌아가시길 희망했다. 그러나 이후 사례 2의 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24시간 돌봄을 전담할 가족도 부족하고, 돌봄 서비스 시간 연장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소’를 옮긴 것이 결국 일종의 죄책감으로 다가와 괴롭고 아쉬워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재가가 아닌 시설 혹은 그도 아닌 제3의 장소(가족 중 누군가와 동거해야 하는 상황)로 이동해야 하는 선택의 상황은 더 어렵고 힘든 경험을 수반한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다시금 시설/병원의 선택지 사이에서 과연 “언제까지” 집에서 모시고, 언제 “그곳”으로 보내야 하는지 그 시기(timing)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노인 돌봄을 생각할 때 장소의 문제는 재가나 시설이냐를 한번에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돌보는 장소에 대한 고민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문제다.

돌봄 장소를 둘러싼 결정에서 어려운 현실은 초기 인터뷰 이후 변화 상황을 전화로 알려준 사례 19의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뷰를 하던 당시 “제가 50대 초반이니, 저희 나이에 [돌봄 부담을] 껴안는 건 혹독하다는 생각이예요. 이게 장기전이기 때문에. [...] 그래서 내가 가능한 시간이 몇 년일지. [...] 너무 길게 잡지 말고 적당하게 잡아서, [...] [그] 이상은 힘들다고 공표할 것 같아.”(S-EC-0529-사례 19)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5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시설로 보내드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사례 19의 경우에는 치매 어머니를 돌본지 이미 10년이 되었고 이제 자신도 많이 지쳐간다고 토로했다. 인터뷰 이후 6개월이 지난 즈음 사례 19는 ‘시설에 신청을 했는데 대기가 길어서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상황을 전화로 들려주었다. 그런데, 곧이어 시설입소 예약을 신청 후 1개월도 안 된 시점에 ‘입소허가’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갈등하고 있는데, 아직은 ‘보내드릴 때’가 아니어서 시설입소를 유보하고 있다고 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돌봄의 사회화는 말처럼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돌봄의 사회화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개별 가족이 돌봄의 부담을 떠맡는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가 밝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어느 장소를 기반으로 가족 돌봄이 진행되었는지가 보다 분명히 파악되어야 누가 담당 하던 돌봄을, 어디에서 제공되던 돌봄을 먼저 사회화하고, 다른 어떤 부분은 시기적으로 아직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순차적 ‘사회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돌봄의 사회화는 추상적인 수준에서만 맴도는 비현실적 구호에 그쳐질 수 있다.

IV. 결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는 돌봄에 대한 자원의 투입(input)과 돌봄의 결과물(output)의 두 가지 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Folbre and Bittman, 2004),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돌봄은 사회적 서비스나 재화가 가족 돌봄에 대한 대체재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가족의 부재 시 시간과 노동을 끼워 넣는 방식을 통한 돌봄 제공자 투입의 측면을 강조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는 이 시간 메우기 차원을 넘어서서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가족과 공적 서비스가 돌봄을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공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돌봄의 결과(outcome)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노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돌봄의 의미(세대 관계, 친밀감, 윤리, 혹은 관계의 역사)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에 맞물려 돌봄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사회적 서비스나 가족 돌봄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가 부상된다.

한국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은 여전히 노인 돌봄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이 개입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글에서는 노인 돌봄과 가족 부양과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누가, 어떤 식으로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족 돌봄 제공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고령화 사회에 노인을 돌보는 것이 왜 부담으로 이야기되는지 그 맥락을 연결해 보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누구’의 문제를 가족과 가족 아님의 구분, ‘어디’의 장소 문제도 재가와 시설의 양 갈래 선택지에만 국한해서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가족 중에서도 누가 노인 돌봄을 해야 하는지, 노인의 병세 진척상황에서 돌보기 적절한 장소 선택에서의 어려움과 딜레마를 겪는 구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누가, 무엇을 담당해야 하는지, 무엇이 규범이고 의무인지,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인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가족 돌봄자들이 힘겨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자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가족 돌봄 제공자가 돌봄을 수행하면서 겪는 신체적 부담과 우울 그리고 소진경험과 같은 심리·정서적 결과물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왔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를 보면,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가족원 간의 갈등과 고민, 조율과정 그 자체가 돌봄을 둘러싼 딜레마와 모순 그리고 심리적 부담의 한 측면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그 누군가’는 장남/며느리 규범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노인과 동거하는 사람, 혹은 장남의 아내에게 요구되었다.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노인 돌봄이 기존의 여성, 며느리 중심으로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음에 따라 사회적 돌봄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돌봄은 유급 노동자를 가족으로 대체하는 방식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동시에 유급 노동자가 ‘누구’의 돌봄을 대체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가족 돌봄은 요양보호사나 시설의 돌봄과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친밀함과 돌봄의 주책임자, 그리고 노인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의 차원에서 ‘가족 같은 돌봄’의 실체는 더 또렷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에서 인용한 핀치(Finch, 1989)의 해석을 적용하자면, 현재 가족 돌봄 제공자들이 겪는 부양의 어려움과 힘듦의 한 측면에는 이러한 가족 돌봄자들의 부양태도와 행위에서 오는 모순과 불일치로 인한 ‘판단정지’의 상태와 내적갈등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누구와 어디서 돌볼 것인가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조정과 조율의 문제, 세대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노년의 배우자/부모를 돌보는데 있어 ‘누구’와 ‘어디’를 가족과 이야기하게 되면, 이때 젠더 문제도 가시화되고, 친자식이냐 며느리/사위냐의 문제도 첨예하게 부각된다. 달(Dahl, 2017)의 표현을 빌리면, 이러한 세대 간(노년 부모와 자녀세대)/세대 내(자녀세대 내의 연령과 세대차)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돌봄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거나, 서로에게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 정해진 규범을 개별 구성원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단순한 구도를 넘어서는 어려움이다(Dahl, 2017: 161-162). 즉, 가족들이 노인 돌봄을 어렵고 힘겹다고 느끼는 맥락의 이면에서는 ‘누구’와 ‘어디’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이 내재해 있다.

이 연구에 몇 가지 한계와 제한점을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들이 노인을 돌보는 과정은 긴 여정이며, 실제로 노인에게 돌봄의 욕구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돌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생애사 형식의 인터뷰 방식을 접합했기 때문에 현재 주돌봄자가 노인을 돌보는 상황에 이르기 이전에 가족단위에서 어떤 맥락이 존재했고, 노인의 건강상태 변화, 돌보는 가족들의 상황 변화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다만, 생애사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방법론은 아니었기에 이 연구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지는 못했다. ‘과정으로서의 돌봄’이 개별사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유사점과 차별성이 있는지 탐색하는 부분은 후속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현재 이 연구는 아픈 노인을 돌보게 된 가족원(동거와 분거상태에서 주 돌봄자인 경우)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사례도 돌봄 수요가 발생하여 동거하는 경우로 사례를 국한하였다. 그런데,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성인 자녀와 동거를 하던 와중에 노인이 건강이 나빠진 경우와 같이 성인 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맥락은 더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아프지 않은 노인과 사는 동거의 맥락도 존재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이 연구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양하게 거주하는 맥락에서 진행되는 가족원들의 의사 결정과 조율 방식에 대한 검토도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노인 돌봄을 집 안에서 할 것인가, 집 밖에서 할 것인가? 누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가를 둘러싼 역학은 노년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에도 합의가 쉽지 않고, 자녀세대 내에서도 코호트와 세대경험에 따라, 그리고 아들과 딸, 언니와 동생, 오빠와 여동생, 누나와 남동생의 입장에 따라 조율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시키는 수고로움을 외면하고, 충돌을 회피하는 사이 가족 중 누군가는 노

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많은 경우 그렇게 내몰린 ‘그’ 사람이 현재 노인을 돌보고 있는 형국이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기 위해 결국은 친밀함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노년의 배우자, 혹은 딸이, 혹은 “요즘 며느리”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어느 며느리가 가족의 이름으로 독박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무임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족들에 의한 돌봄의 힘겨움 한 축에 이러한 선택과 결정, 조정과 협상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은 유임금의 요양보호사가 노인 돌봄 시간을 메우는 방식으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사회는 그 맥락의 근거와 원칙을 살펴보고 사회적 차원의 합의와 더불어 개별 가족 차원에서도 갈래잡기를 시작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2018,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권현정·고지영,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부양가구원과 여성가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4): 279-299.
- 김동배·박서영·김상범, 2010.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족수발자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비교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17-135.
- 김유경, 2019. “중장년층 이중부양부담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71(5): 74-92.
- 김정석, 2007.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년기 거주형태 변화분석.” 『한국인구학』 30(1): 1-24.
- 김찬우·박연진, 2014.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노인 돌봄문화에 대한 탐색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44: 82-115.
- 노혜진, 2014.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213-238.
- 모선희·최세영, 2013.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가족의 부양부담 변화.” 『비판사회정책』 40: 7-31.
- 백용운·최수일, 2010. “장기요양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9: 215-240.
- 서울신문, 2019 3월 19일자 “76%가 병원 객사, 이제는 더 나은 죽음 생각해야”
- 석재은, 2009. “노인 돌봄 공적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노인과 가족 간 관계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가족과 문화』 21(1): 29-61.
- 석재은, 2014.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개념 정립과 향상 방안: 현행 전략의 한계와 좋은 돌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한국사회복지학』 66(1): 221-249
- 석재은·노혜진·임정기, 2015.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3): 203-225.
- 신경아, 2011. “노인 돌봄의 탈가족화와 노인의 경험: 재가노인과 시설거주 노인의 경험 연구.” 『한국사회학』 45(4): 64-96.
- 양난주, 2013. “가족요양보호사의 발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가족은 왜 요양보호사가 되었나?” 『한국사회정책』 20(2): 97-129.

- 양영자, 2018. “노부모 돌봄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2): 5-37.
-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선형·조막래·이지혜, 2015. 『가족 내 다양한 돌봄 지원을 위한 기초조가 및 방안 마련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석민,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양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1): 169-194.
- 이승호·변금선·신유미, 2016. “노인 재가서비스의 확대가 가족의 생활시간에 미친 영향: 삼중차이방법의 적용.” 『한국사회정책』 23(1): 227-256.
- 이진아,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가 수급자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0: 81-112.
- 이현주,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도이용자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사회보장연구』 31(2): 185-208.
- 최인희·김은지·정수연·양난주, 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인희·김영란·염지혜, 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인희·김정현, 2013.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돌봄자의 돌봄부담 영향요인 비교 연구.” 『가족과 문화』 25(3): 159-185
- 최인희·김영란·이아름·박신아, 2014. 『노년기 가족돌봄의 위기와 지원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인희·송효진·지은숙·정다은, 2016. 『남성의 관점에서 본 노인돌봄 경험과 역할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희경, 2010.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8: 31-58.
- 한경혜·차승은·민주홍, 2018. “한국 노년가족학 연구의 최근 10 년 연구경향과 향후 과제.” 『한국노년학』 38(3): 667-683.
- 한은정·김혜경·이정석·권진희,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 가족주수발자의 서비스 이용지원에 대한 경험: 표적집단 면접조사(FGI)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4: 246-277.

- Bittman, M., Fast, J. E., Fisher, K., and , C. Thomson. 2004.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The life and time(s) of informal caregivers." pp.69-89. in Folbre, Nancy and Michael Bittman.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lome, A., Keck, W., and , J. Alber. 2009. *Family and the welfare state in Europe: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ageing societies*. Cheltenham: Edward Elgar.
- Bonsang, E. 2009. "Does informal care from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substitute for formal care in Europ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8(1): 143-154.
- Dahl, H. M. 2017. *Struggles in elderly care: A feminist view*. London: Palgrave Macmillan.
- Eun, K. S. and E. Kang. 2019. *Care arrangement and caregiving activities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2018 Care Work Family Survey on Child care and Elder care*. Unpublished report for care work and the economy and gender sensitive macroeconomic modelling for policy analysis (CWE-GAM) project.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 Finch, J. 1989. *Family obligations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 Folbre, N., and M. Bittman. 2004.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Vol. 2) Psychology Press.
- Folbre, N. and E. O. Wright. 2012. "Defining care." in Nancy Folbre (ed). *For love or money: Care provision in the United States* (pp. 1-20). New York: Russell Sage.
- Mason, J. 2002.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 London: Sage Publishing.
- Moon, H, Cha, S. E., Eun, K. S., Kang E. and I. Peng. 2019. *Qualitative methodology report for the care economy and gender sensitive macroeconomic modelling for policy analysis project*. (unpublished).
- Portelli, A. 2006. "What makes oral history different." Chapter 3. in Perks, Robert and Alistair Thomson ed. *The oral history reader*. London: Routledge.
- Portelli, A. 2018. "Living voices: The oral history interview as dialogue and experience." *The oral history review*. 45(2): 239-248.

Razavi, S. (2007). *The political and social economy of care in a development context: Conceptual issues, research questions and policy options* (No. 3).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2020. 01. 15. 접수, 2020. 02. 28. 심사, 2020. 03. 25. 채택)